



전국 지부 연락망(공제계약안내 및 사고접수)

지부명	전화번호	주 소
본 부	(02) 563-8034/6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전국개인택시회관 3층
서울지부	(02) 2140-38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11층
부산지부	(051) 500-8600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9, 3층
대구지부	(053) 764-0621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03 운수연수원 3층
인천지부	(032) 577-4281	인천시 부평구 백범로 577번길 20 경인센터 관리동 403호
광주지부	(062) 576-9100	광주시 북구 하서로 570-6, 3층
대전지부	(042) 583-8040/1	대전시 중구 산성로 57번길 183, 5층
울산지부	(052) 211-2761/3	울산시 중구 성안15길 49, 2층
경기지부	(031) 240-33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48번길 22
강원지부	(033) 242-3652/3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143번길 50 강원도개인택시회관 3층
충북지부	(043) 221-2382/3	충북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80번길 14, 2층
충남지부	(041) 334-8027/8	충남 예산군(읍) 금오대로 112, 2층
전북지부	(063) 214-5951/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23, 1층
전남지부	(061) 800-8080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80 제일프라자 9층
경북지부	(053) 753-3846/7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 19, 3층
경남지부	(055) 276-09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0번길 10-15, 2층
제주지부	(064) 744-2795/6	제주도 제주시 정준1길 22, 2층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지체없이 계약지부 또는 사고발생지역 관할지부로 아래 내용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차량번호, 조합원
- ② 사고일시와 장소
- ③ 사고경위
- ④ 피해자 인적(피해차량) 사항
- ⑤ 병원과 정비공장
- ⑥ 목격자 성명과 연락처



차량고장시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은
(단,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지역번호없이 **1644-4499**

“조합원과 함께 발전하는 공제조합”

자동차공제약관

(공제규정 포함)

업무 400-415호(23. 4. 14.)
제작 23. 4. 14.(1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 제 조 합

자동차공제약관

자동차공제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공제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 공제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조합원과 공제조합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보통약관

I.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 1 공제가입대상 자동차 및 기명조합원
- 2 자동차공제의 구성
- 3 공제계약의 성립
- 4 공제분담금의 납입방법
- 5 공제유효기간
- 6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 7 자동차공제 분담금의 계산방법
-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및 사고할증
-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 10 용어정의

II.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 11 배상책임(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 12 자손공제
- 13 무보험차상해공제
- 14 차량공제
- 15 긴급출동서비스공제
- 16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 17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18 공제금의 분담 및 공제조합의 대위

III. 공제계약 관련사항

- 19 공제계약의 소멸과 분담금의 환급
- 20 공제계약의 승계
- 21 공제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 22 공제안내장 등의 효력
- 23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 24 기타사항

IV. 공제금 지급기준

- 25 대인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 지급기준
- 26 대물공제 지급기준
- 27 자손공제 지급기준
- 28 과실상계 등

특별약관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공제규정

I.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1 공제가입대상 자동차 및 기명조합원

- ‘공제가입대상 자동차’는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이며, ‘기명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을 때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되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 기명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는 계약당사자(이하 ‘공제계약자’라 합니다)로서의 조합원임과 동시에 공제사고발생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에 해당합니다.
- 이 약관에 따라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공제계약자동차’라고 합니다)를 운전(용어정의 ②)할 수 있는 사람은 기명 조합원 <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용어정의 ④)> 1인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대인공제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공제의 구성

- 공제조합이 취급하는 자동차공제는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자손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 차량공제의 6가지 담보종목과 긴급출동서비스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조합원이 가입한 담보종목별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조합원은 이들 6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공제 I (책임공제), 대인공제 II 및 대물공제(이하 ‘의무보험’(용어정의 ③)이라 합니다)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상세한 내용은 ‘II.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공제 I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공제 II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공제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공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손공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 상해공제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차량공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3 공제계약의 성립

1.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은 조합원이 청약을 하고 공제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조합원이 청약을 할 때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분담금 등’이라 합니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그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조합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 없이 자동차공제증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제1회 분담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공제계약이 성립하면 공제조합은 ‘5 공제유효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제유효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제1회 분담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4 공제분담금의 납입방법

1. 분담금의 분할납입

(1) 분담금의 분할납입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분할납입을 요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자동차공제요율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분할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분담금의 납입방법

조합원은 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 ①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공제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조합원이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최고 합니다.

④ 위 '①'의 납입최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 약관 '6'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2.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를 공제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 장소로 하며, 전화로 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을 때,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 확인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공제계약의 부활

① 위 '(3)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의 '②' 또는 아래 '2. (3)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의 '④'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공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조합원이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분담금의 자동이체납입

(1) 적용대상

조합원이 분담금을 조합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공제조합 및 지정은행과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분담금의 자동납입

① 조합원은 분담금을 분할 납입할 때는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 납입합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분담금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이체일자 (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③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공제조합이 청구한 분담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분담금은 이체납입 되지 않습니다.

(3)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① 공제조합은 분할분담금이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공제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신규 또는 갱신계약시 초회 분담금은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 분담금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은 약정이체일에 분할분담금이 이체납입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분담금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조합은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조합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④ 납입최고기간 말일까지 분할분담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 말일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3

4

(4)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합원은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3. 분담금의 신용카드이용납입

(1) 적용대상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을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조합원으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분담금을 납입하기로 공제조합 및 신용카드 회사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분담금의 영수

공제조합은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약정에 따라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조합원이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분담금을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분담금의 영수시점으로 합니다.

(3) 사고카드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공제 계약은 공제조합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5 공제유효기간

공제조합이 계약체결시 조합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제유효기간
일반적용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유효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 전(前) 계약의 공제유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공제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외적용	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유효기간 이전에 분담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유효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6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 전 알릴 의무

(1)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공제계약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 사항

②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 ④ 조합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
 - ⑤ 이 공제계약을 맺기 직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 ⑥ 법정대리운전기간 중인 경우 법정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공제조합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공제청약서 기재 사항
- (2)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액분담금을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5
6

2. 계약 후 알릴 의무

- (1)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공제계약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③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 물을싣게 된 사실
 -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 (2) 조합원은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 (1) 조합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② 다음 사항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공제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⑤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⑥ 공제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2)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자동차공제 분담금의 계산방법

1. 자동차공제 분담금은 '자동차공제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납입할 분담금	=	기본 분담금 $\times (1 \pm \text{범위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 요율 (등급적용요율 + 특별할증) \pm 가입자특성요율
------------	---	--	---	----------	---	--

주) 대인공제 I 은 특별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기본분담금**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공제가입금액(용어정의 ⑤),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분담금
- **범위요율** : 손해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예상되어 손해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등급적용요율과 특별할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사고의 빈도, 성별, 연령,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등 피보험자의 고유성향에 따라 손해율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요율

2. 공제유효기간의 개시 이전에 분담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전의 분담금과 변경후의 분담금과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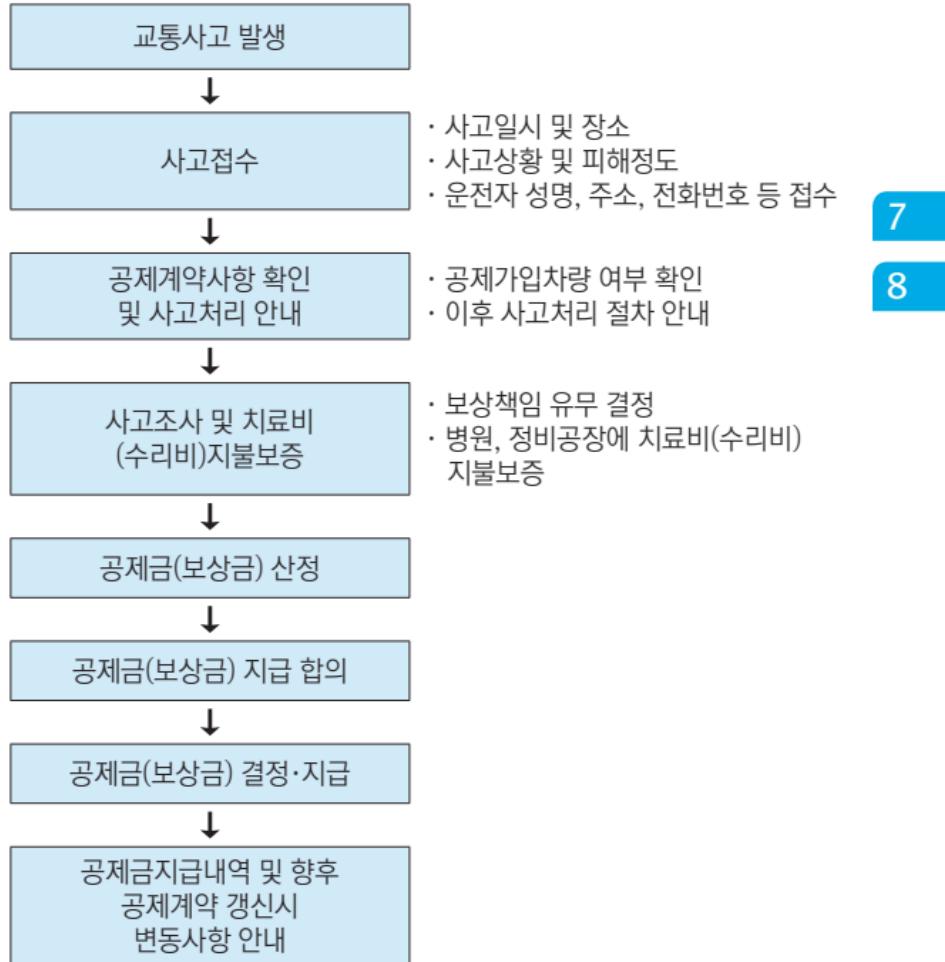
3. 과오납 분담금의 반환

공제조합의 고의·과실로 기명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제계약자가 적정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를 안 날 또는 공제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정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분담금을 초과한 분담금만 돌려드립니다.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및 사고할증

1. 보상처리 흐름도

공제계약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사고발생시 할증내용

(1) 분담금의 할인·할증율 적용

분담금의 할인·할증율은 등급적용요율과 특별할증을 합산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text{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text{등급적용요율} + \text{특별할증}$$

(2) 적용등급의 결정

평가대상기간(용어정의 ⑯) 중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점수는 매 건별 사고내용 및 원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3) 할인·할증 등급의 적용

적용등급은 1Z부터 25P으로 하며 적용율은 적용등급당 정해진 요율에 특별할증율과 가입자특성요율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 할인할증 등급의 의미 :

Z(Zero)는 일반등급

P(Protection)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F(Five)는 두 개의 일반등급(Z)의 가운데 등급

(4) 할인·할증 적용등급의 결정

- 가. 신규계약 : 기본등급(11Z)를 적용합니다
 나. 갱신계약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 및 공제 계약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및 과거 3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있는 경우

가)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만 있거나 사고기록 점수가 0.5점인 경우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합니다. 다만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 중 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공제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실제 구상 여부 불문)인 경우는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나) 사고기록 점수 합계가 1점 이상인 경우

① 전계약이 일반등급(Z, F등급)인 경우

전계약 등급	갱신계약 등급
(1~25)Z	$\{(1\sim25) - \text{사고점수}\}Z$ 단, $\{(1\sim25) - \text{사고점수}\} < 1 \rightarrow 1Z$
(1~24)F	$\{(1\sim24) - \text{사고점수}\}F$ 단, $\{(1\sim24) - \text{사고점수}\} < 1 \rightarrow 1Z$

② 전계약이 보호등급(P)인 경우

전계약 등급	갱신계약 등급
25P	사고점수 1.5점 이하인 경우 : 25Z
	사고점수 2점 이상인 경우 : $\{(25 - (\text{사고점수} - 1))\}Z$

※ 보호등급(P) 적용자는 '0.5점~2점미만' 사고시 현 등급의 일반등급(Z)으로 적용.

다) 조합원 과실이 50% 미만일 경우

- ① 평가대상 기간 최근 1년간 사고내용별 점수·사고원인별 점수는 제외하고, 3년간 할인 유예합니다.
- ② 단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에는 가장 높은 점수 1건만 제외 해 드립니다.
- ③ 2017년 10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없는 경우

가)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공제계약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거나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만 있는 경우

① 전계약의 공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일반등급 (Z, F등급)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1개월이내 갱신	1개월초과 3년내 갱신
12~9F	11Z		전계약 적용등급
	(10~24)Z	$\{(10\sim24)+1\}Z$	
	25Z	25P	
	(10~23)F	$\{(10\sim23)+1\}F$	
	24F	25Z	

보호등급 (P)	전계약 적용등급	갱신계약 적용등급	
		1개월이내 갱신	1개월초과 3년내 갱신
	25P	25P	25Z

② 전계약의 공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적용합니다.

나)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공제계약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계약기간)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적용합니다.

○ 사고내용별 점수

구 분	사 고 내 용		점 수
대인사고	사망 사고		건당 4점
	부 상	1급	
		2~7급	건당 3점
		8~12급	건당 2점
		13~14급	건당 1점
자 손 사 고			건당 1점
물적사고 (대물공제, 차량공제)	할증 기준 설정금액 초과		건당 1점
	할증 기준 설정금액 이하		건당 0.5점

○ 사고원인별 점수

사 고 원 인	점 수
주취한계이상, 약물중독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3점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3점
범죄행위 사고	3점
중대법규 위반, 주취한계미만 사고	1점

(5) 특별할증율의 결정

평가대상기간은 과거 3년간으로 하며 적용대상사고에 해당하는 그룹의 특별할증율을 등급적용요율에 합산 적용합니다.(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 제외)

구 分	적용대상 사고	특별할증율
A그룹	주취한계 이상사고, 약물중독사고,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사고, 위장사고, 범죄행위사고, 3년간 4회 이상사고	200%한도
	교통사고 발생 후 할증된 분담금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로 이탈하였다가 재가입하는 경우 (3년간 적용)	
B그룹	3년간 3회사고, 중대법규위반사고, 주취한계미만 사고, 사망 또는 부상 7급이상 대인사고	40%한도
C그룹	3년간 2회사고, 부상 8급~10급대인사고, 300만원 초과 물적사고	30%한도
D그룹	부상 11급~14급대인사고, 할증기준 설정금액 초과 300만원 이하 물적 사고, 자손공제사고	10%한도

(6) 가해자 불명사고(차량담보) 할증 적용

조합원의 과실이 없는 사고 중 가해자 불명사고는 다음과 같이 할증을 적용합니다.

구 분	적 용
30만원 이하	1년 할인 유예
30만원 초과 ~ 물적 사고 할증 기준 설정금액 이하	3년 할인 유예
물적사고 할증 기준 설정금액 초과 또는 2건 이상	1점 할증

(7) 공제 재가입 조합원의 등급 적용

조합원이 자동차보험으로 이탈하였다가 공제조합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적용받을 할인·할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에서 이탈하여 3년 이내에 공제조합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공제이탈시의 갱신 할인·할증 등급과 비교하여 높은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고, 3년 경과이후 공제조합으로 재가입시 손보사 갱신 할인·할증 등급이 기본등급(11Z)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본등급을 적용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 할증된 분담금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로 이탈하였다가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할증(100%)을 3년간 부가합니다.

(8) 공제계약의 승계시 등급 적용

(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제계약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공제계약은 승계되지 아니하며, 양도·양수시점부터 양수인 명의로 기본 적용등급(11Z)을 적용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대체시의 적용

대체된 자동차에 공제계약이 승계되었을 경우 대체전의 자동차와 대체후의 자동차를 동일한 자동차로 보며, 대체된 자동차에 대하여 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계약에 대하여 할인·할증 평가에 따른 갱신계약 적용등급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체폐차기간동안 신차에 대하여 별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적용등급을 적용합니다.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자, 조합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3) 공제조합이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4)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공제조합이 위 ‘2. (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조합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조합원은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9

10

4. 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조합의 본부, 지부 또는 사업소 소재지 중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0 용어 정의

① 자동차공제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자동차공제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②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④ 법정대리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고가 수리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자를 말합니다.

⑤ 공제가입금액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최고 한도액으로서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조합과 조합원이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⑥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조합원의 부모라 함은 조합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조합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조합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⑦ 무보험자동차

공제계약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의 대인공제II 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의 대인공제II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의 대인공제II 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의 대인공제II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⑧ 배상의무자(무보험차상해공제)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⑩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공제계약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⑪ 공제가액(차량공제)

- 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공제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그러나 위 “가”호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공제계약을 맺었을 경우 자동차공제 증서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 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공제가액으로 합니다.

⑫ 전부손해(차량공제)

공제계약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⑬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⑯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 (*1) 예 :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⑰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마약·약물운전이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⑯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를 말합니다.

⑰ 대체폐차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⑱ 평가대상기간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공제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의 공제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전계약의 공제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전계약의 공제계약기간 초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전계약이 신계약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공제계약기간 초일부터 공제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합니다.

II.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1 배상책임(대인공제 I, 대인공제II, 대물공제)

‘대인공제 I(책임공제)’, ‘대인공제 II’ 및 ‘대물공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개인택시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1. 보상내용

- (1)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공제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합니다.

- (2)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며, 대인공제 I 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공제II와 대물공제의 경우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지급 공제금} = \boxed{\begin{array}{l} \text{‘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text{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 \text{조합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end{array}}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①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기타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③ 위 ‘공제액’은 대인공제II의 경우 ‘대인공제 I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공제계약자동차가 대인공제 I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공제 I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공제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조합원
- (2) 법정대리운전자

12 자손공제

1. 보상내용

- (1)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공제조합이 자손공제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망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부상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7](#) 자손공제 지급기준’의 ‘2)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상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27** 자손공제 지급기준’의 ‘3)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에 따라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각 장애 급별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가족생계비 및 방어비용

가. 가족생계비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구속되어 복역하는 경우 ‘**27** 자손공제지급기준 4)’에 따라 가족생계비를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방어비용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구속된 경우 ‘**27** 자손공제 지급기준 4)’에 따라 방어비용을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text{지급공제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 가족생계비 및 방어비용은 실제손해액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12

- (4) 실제손해액은 ‘**25** 대인공제·무보험차상해공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5)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6)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공제 I(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공제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② 무보험자동차상해공제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다만, 무보험차상해공제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③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④ 다만, ‘①’, ‘②’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제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공제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7) 공제조합이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공제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공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인 조합원이 본인의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조합원
- (2) 법정대리운전자

- (3)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 정의⑥)

13 무보험차상해공제

1. 보상내용

- (1)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 (용어정의⑦)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⑧)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boxed{\text{지급 공제금}} = \boxed{\text{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① 위 ‘지급공제금’은 조합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공제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의 대인공제II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조합원의 범위

- (1)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명조합원
 ② 법정대리운전자
 ③ 기명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위 ‘(1)’의 조합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가입한 대인공제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차량공제

1. 보상내용

- (1)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동차 공제 증서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① 타차 또는 타 물체(용어정의⑨)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⑩)로 인한 손해
-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③ 공제계약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공제계약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⑤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지급 공제금} = \boxed{\text{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3

14

① 위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액(용어정의⑪)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 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공제계약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1)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라. 공제계약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곳 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 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위 ‘자기부담금’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⑫)가 생긴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공제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④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차량공제」 담보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공제」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공제」 공제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조합원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공제」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조합이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조합원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공제조합)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공제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4) 공제조합이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공제의 공제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5)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입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의 공제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 공제조합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명조합원입니다.

15 긴급출동서비스 공제

1.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공제조합에 요청할 때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구난서비스

- ①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조합원에게 청구됩니다.
 - 가.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나. 2대 이상의 구난형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다.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 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 라. 외제차량 또는 2,700cc 이상의 차량을 구난한 경우

마.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 또는 구난차량 및 지원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② 위 '①'에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공제)에 의하여 보험금(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긴급견인서비스

- ①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공제계약자동차의 고장 또는 차량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 또는 주유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 초과거리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해야하며, 휘발유 또는 경유차량의 연료소진으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긴급견인서비스 확장형에 계약하신 조합원의 경우에는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초과거리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 해야합니다.

- ② 위 '①'에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공제)에 의하여 보험금(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조합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외산차량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신형 및 고급차량 등의 잠금장치 해제

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 ②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배터리충전서비스

-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

- 타이어의 평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 해 드리며, 출동현장에서 평크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평크수리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다만, 새 타이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체하여 드립니다.

(6) 부가서비스

- 조합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정비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차량진단 서비스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2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가지 주요항목”이란 오일점검(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클러치오일, 브레이크오일), 벨트류(타이밍벨트, 팬벨트, 파워벨트, 에어컨벨트), 전기장치(배터리, 플러그배선), 냉각장치(부동액, 라지에타호스), 외관상태(와이퍼, 워셔액, 브레이크, 예비타이어, 타이어마모상태, 타이어공기압), 기타(조향장치)를 말합니다.

② 정비이력관리 서비스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③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정비 받기 위하여 요청 할 경우 차량정비를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④ 실내크리닝 업체안내 및 할인 서비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실내크리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크리닝 업체안내 및 할인된 가격으로 크리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3.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공제조합은 긴급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도서지역(제주도, 연륙교 연결도서 제외) 또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자연재해 또는 기상악화로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2) 공제조합은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 또는 미제공, 자연함에 있어 발생하는 간접손해나 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3) 공제계약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단, 위 '2. (2)' 긴급견인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합니다.

4. 조합원

이 약관에 있어 조합원이라 함은 공제조합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조합원
- (2) 법정대리운전자

5. 계약의 자동종료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위 '2. (1)~(5)'의 서비스를 계약기간 중 6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때로부터 긴급출동서비스는 종료합니다.

다만, 서비스 횟수산정에 있어서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 경우에는 서비스 횟수는 각각 산정됩니다.

6. 분담금의 환급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9 공제계약의 소멸과 분담금의 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합니다.

16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대인공제 I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2) 대인공제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조합원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⑦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⑧ 기명조합원(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3) 대물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조합원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⑦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⑧ 조합원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조합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⑨ 공제계약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⑩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⑭)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⑪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 정의⑭)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⑫ 기명조합원(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4) 자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합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조합원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상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4) 자손공제	<p>⑤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⑦ 조합원이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 ⑧ 기명조합원(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p>
(5) 무보험차 상해공제	<p>① 기명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조합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상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⑦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⑧ 기명조합원(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조합원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조합원의 사용자 또는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p>
(6) 차량공제	<p>①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⑥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과과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⑦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⑧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⑨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⑩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⑪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송 또는 신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p>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6) 차량공제	<p>⑫ 공제계약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공제계약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 또는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조합원 및 기명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p> <p>⑬ 조합원이 마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p> <p>⑭ 조합원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 ⑯)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p> <p>⑮ 기명조합원(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p>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1) 조합원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대인공제 I」 : 「대인공제 I」 한도 내 지급공제금
 - ② 「대인공제 II」 : 1사고당 1억원
 - ③ 「대물공제」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공제」 공제가입 금액 이하 손해 : 지급공제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공제」 공제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④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 사고발생 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조합원은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사고 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1)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공제 I · II 대물공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손공제	①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② 가족생계비의 경우에는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구속으로 복역한 때 ③ 방어비의 경우에는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
무보험차 상해공제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차량공제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제계약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계약자동차의 반환여부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릅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공제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자손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조합원은 담보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공제	대물 공제	차량 공제	자손 공제	무보험차 상해공제
1. 공제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 원 등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공제 II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공제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공제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 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개시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 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수리 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4) 가지급금의 지급

- ①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공제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조합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7** 1. (3)’에서 정하는 서류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①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④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3) 제출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담보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공제 I · II	대물공제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개시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 개시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수리 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4) 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 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조합의 공제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 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7** 2. (3)'에 정한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공제금의 분담 및 공제조합의 대위

1. 공제금의 분담

대인공제 I · II, 대물공제, 무보험차상해공제, 자손공제, 차량공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11**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이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11** 배상책임' 중 '1. (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조합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공제조합의 대위

- (1) 공제조합이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조합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2) 공제조합은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① 자손공제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다만, 공제금을 '**25** 대인공제·무보험차상해공제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차량공제의 경우 공제계약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미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③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3) 조합원은 공제조합이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공제계약관련사항

19 공제계약의 소멸과 분담금의 환급

1. 공제계약의 소멸

(1) 공제계약의 취소

공제조합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 대리인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공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공제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나.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 공제계약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20** 공제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20** 공제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과 계약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에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공제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공제계약을 맺기 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계약기간 개시되는 의무보험에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18

19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는 기명조합원의 동의를 얻거나 자동차공제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기명조합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조합원이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6**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중 ‘1. (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ㄱ)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공제조합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조합원이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
(ㄷ)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ㅁ)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항이 공제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이 이미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이를 공제조합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 ② 조합원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6**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중 ‘2. (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ㄱ)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분담 금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이 이미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이를 공제조합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 ③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④ 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6** 조합원 등의 의무사항’ 중 ‘1. (2)’, ‘2. (1)’ 또는 ‘**20** 공제 계약의 승계’ 중 ‘2. (3)’ 등에 의하여 차액분담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이 그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⑤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조합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분담금의 환급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합니다.

(1) 공제계약이 무효, 취소로 된 경우

무효·취소의 유형	환급 방법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분담금의 전액을 환급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제조합이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고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분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함

(2)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급 방법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환급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공제조합이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급 방법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
(다만, 19 공제계약의 소멸과 분담금의 환급 중 1.(2)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마’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19 공제계약의 소멸과 분담금의 환급 중 1.(3)에 해당하는 경우
3.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상실

〈단기요율표〉

계약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2월까지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계약기간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4) 공제계약의 해제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5) 운휴

- ① 조합원이 질병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공제에 가입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 ②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공제조합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 ③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 기간의 개시일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공제계약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6) 상기 ‘(1)’ 내지 ‘(5)’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환급받은 결과 당해 공제계약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계약시 무사고로 인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 공제계약의 승계

1.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 (1) 기명조합원이 공제계약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공제계약자 및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에서 규정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공제계약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대인공제 I, 대물공제(*1) 일시 담보

① 공제조합은 상기 ‘(1)’,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양수인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공제’의 경우 공제조합이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은 1사고당 대물 의무공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배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물 배상책임 한도 내 의무공제

② 공제조합은 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양도된 공제계약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나. 양도된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공제 I 및 대물공제」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다. 공제약관 ‘**5** 공제유효기간’의 「대인공제 I 및 대물공제」 계약 성립시 설정된 공제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라. 「대물공제」에서 양도인의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기명 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공제조합은 위 ‘①’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 공제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④ 공제조합은 위 ‘①’에 의해 공제조합이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분담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양수인은 위 ‘④’의 분담금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공제계약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조합원이 공제유효기간 중에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개인택시)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공제조합이 승인한 때로부터 이 공제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2) 공제계약자동차를 대체폐차(용어정의⑪)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대체하는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 또는 출고 시부터 공제혜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공제계약승계의 승인을 얻거나 대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공제조합이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공제요율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차액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4) 공제조합이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차액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분담금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	---------------------

21 공제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조합원에게 공제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공제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2.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조합원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체없이 공제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만약, 공제조합이 전 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모바일 앱 포함)로 제공한 경우 조합원이 공제약관 및 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1) 또는 전자우편
- (*) 다만, 지로를 이용하여 공제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동봉하는 지로청약서로 청약서 부본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3. 공제조합이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원은 공제계약성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이미 납입한 분담금 및 이자(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반환 시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분담금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22 청약 철회

1. 조합원은 공제증서를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서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증서를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공제조합이 이를 증명합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조합원이 동 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2) 공제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공제계약
4. 청약철회는 조합원이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원은 저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공제조합에 자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5.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립니다.
6.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합원이 공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7. 공제조합이 위 '5.'의 분담금 반환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이 제1회 분담금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공제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3 공제안내장 등의 효력

공제조합이 공제계약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 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공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4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공제조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공제조합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제계약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담보종목, 공제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5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미납입 분담금의 공제

조합원이 분담금의 전액을 납입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지급 하여야 할 공제금(이미 지급한 공제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이미 지급 받은 분담금의 합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에서 미납입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합원, 피해자 등이 공제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22

23

24

25

IV. 공제금 지급기준

26 대인공제·무보험차상해공제 지급기준

【사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 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times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times 노무기여율 \times 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 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 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 ① 이 공제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 ②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분은 보통인부, 제조 부분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공제조합으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 가능 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 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 (5) 외국인
-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①)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 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②)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 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①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i=5/12%, n=취업가능월수

【부상】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공제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조합원이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 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공제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공제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 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 (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제조합이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 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후유장애 】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공제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 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공제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2) 가사종사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3) 무직자(학생포함)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
- (6) 외국인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대인공제 I - 책임보험 / 부상관련)

상해 등급	공제가입금액	상해 등급	공제가입금액
1급	3,000만원	8급	300만원
2급	1,5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200만원	10급	200만원
4급	1,000만원	11급	160만원
5급	900만원	12급	120만원
6급	700만원	13급	80만원
7급	500만원	14급	5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대인공제 I - 책임보험 / 후유장애 관련)

상해 등급	공제가입금액	상해 등급	공제가입금액
1급	15,000만원	8급	4,500만원
2급	13,500만원	9급	3,800만원
3급	12,000만원	10급	2,700만원
4급	10,500만원	11급	2,300만원
5급	9,000만원	12급	1,900만원
6급	7,500만원	13급	1,500만원
7급	6,000만원	14급	1,0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27 대물공제 지급기준

1사고당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공 제 가 입 금 액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무한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 수리비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2) 열처리 도장료 :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 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 (3) 한도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 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 대차를 하는 경우
 -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 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 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28 자손공제 지급기준

- 1) 사망공제금 : 2,000 / 3,000 / 5,000 / 10,000만원
 2)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1급	1,500만원	6급	400만원	11급	100만원
2급	800만원	7급	250만원	12급	60만원
3급	750만원	8급	180만원	13급	40만원
4급	700만원	9급	140만원	14급	20만원
5급	500만원	10급	1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가입금액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1급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2급	1,8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6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4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1,2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8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6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48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36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8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12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4) 가족생계비 및 방어비용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에 한함)

가. 생계비 : 1일 2만원

- 구속·복역시 : 복역기간

- 입원시 : 입원기간 60일 한도

나. 방어비 : 구속시 100만원

29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 (1) 이 기준의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차상해공제」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 (2) 「대인공제 I」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공제 I」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 (3) 「대인공제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 공제금, 부상 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공제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

28

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공제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조합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공제계약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표〉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 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른)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 요소	수정 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별표1〉 상해의 구분과 공제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급	3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u>스탠트그라프트</u>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3급	1,200만원	<p>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p> <p>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p> <p>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p> <p>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p> <p>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p> <p>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골절은 제외한다)</p> <p>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4급	1천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p> <p>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p> <p>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p> <p>8. 상완골 경부 골절</p> <p>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p> <p>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p> <p>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p> <p>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p> <p>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18. 골반화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p> <p>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4급	1천만원	<p>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p> <p>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5급	9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치료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p> <p>4. 안정성 추체 골절</p> <p>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6. 상완골 간부 골절</p> <p>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p> <p>9. 요골 경상돌기 골절</p> <p>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p> <p>11. 수근 주상골 골절</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p> <p>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20. 슬개골 골절</p> <p>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p> <p>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p> <p>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p> <p>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6급	7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6급	700만원	<p>4. 심장 타박</p> <p>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p> <p>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p> <p>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 한다)</p> <p>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p> <p>18. 요골 경부 골절</p> <p>19. 척골 주두부 골절</p> <p>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p> <p>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p> <p>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p> <p>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p> <p>30. 사지근 또는 건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7급	500만원	<p>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p> <p>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p> <p>5. 쇄골 골절</p> <p>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p> <p>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파열</p> <p>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p> <p>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p> <p>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 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p> <p>15. 수근부 주상골 · 월상골간 인대 파열</p> <p>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p>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7급	500만원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주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9급	240만원	<p>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수지관절 탈구</p> <p>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p> <p>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0급	200만원	<p>1. 3cm 이상 안면부 열상</p> <p>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p> <p>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p> <p>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1급	160만원	<p>1. 뇌진탕</p> <p>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p> <p>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2급	120만원	<p>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p> <p>2. 3cm 미만 안면부 열상</p> <p>3. 척추 염좌</p> <p>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p> <p>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p> <p>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3급	80만원	<p>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 단순 고막 파열</p> <p>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p> <p>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4급	50만원	<p>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 수족지 관절 염좌</p> <p>3. 사지의 단순 타박</p> <p>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두부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 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12점, 경도는 13~15점을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 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p>
상·하지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편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 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영역	내 용
상 · 하지 공통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 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상지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하지	<p>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p> <p>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p>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p> <p>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공제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1급	1억 5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반신불구가 된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 3,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 2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6급	7,500만원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9급	3,800만원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u>흉복부</u>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네번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u>흉복부</u>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네번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시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 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의 의학적 ·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특별약관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차량공제」를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자동차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차량공제」에 따라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1)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2)의 25%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제②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부품'이라 함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16(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조합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조합원은 기명조합원을 말합니다.

제5조(공제금의 환입)

- ① 조합원이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차량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을 전액 조합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조합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역 등의 사유로 조합이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공제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공제금 포함)이 공제가입금액(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공제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공 제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칙)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전국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조합원)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 4 조 (소재지 등)

공제조합의 본부는 연합회 사무소 소재지에, 지부는 각 시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다만, 공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부 승인하에 적합한 지역에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조합원의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부신하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 5 조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공제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이하 “공제 계약자동차”라 한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의 자배법에 의한 대인공제 I 과 대인공제 I 지급한도액 초과에 대한 대인공제II를 포함하는 공제
2.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공제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공제계약자동차에 발생한 직접손해에 대한 공제
3. 공제사고로 말미암아 조합원 또는 신고된 대리 운전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공제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 2 장 공제조합 가입 및 공제계약

제 6 조 (공제가입 및 계약)

- ①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 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에 관한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7 조 (가입금의 납입 및 환급)

- 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3만원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은 공제조합 본부에서 적립·관리한다.
- ③ 조합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지 및 양도되어 공제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가입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조합을 비임의 탈퇴하거나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청구하면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다.
- ⑤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가입금은 제③, ④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조합원에게 가입금을 승계할 수 있다.

제 8 조 (증명서 교부 등)

- ① 공제조합은 제7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 “가입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는 자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공제가입증명서(분담금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증명서가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공제조합이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확인을 한 후 즉시 증명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분담금과 공제금

제 9 조 (분담금액의 결정)

- ① 분담금액은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분담금의 분담 비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인공제 I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자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분담금은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순분담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필요한 부가분담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인공제 I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책임공제 순분담금, 보장사업분담금 및 부가분담금으로 구분한다.
- ③ 공제조합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범위요율 적용한도 내에서 제①항의 분담금의 일정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④ 공제조합이 제①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지부 단위로 공제사고의 손해율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분담금의 납입 및 할인할증)

- ① 조합원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공제계약 책임개시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고발생 유무 및 공제계약차량의 특성에 따라 분담금을 할인할증 할 수 있다.
- ③ 분담금의 납입 및 할인할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분담금요율서에 따로 정한다.

제 11 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 ①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는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비 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다.
- ② 공제금의 지급은 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지부 단위로 관리, 처리한다.

제 4 장 위 · 수탁업무

제 12 조 (위 · 수탁업무 등)

- ① 공제조합은 사업조합에 다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5. 2. 12)
 1. 공제계약 청약서 작성
 2. 사고발생시 기초현장조사 및 증거확보 지원
 3. 사고예방 홍보 및 교육
 4. 조합원에게 공문서 전달 및 공지사항 전파
 5. 기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항
- ② 회장 및 사업조합이사장은 계약활동을 할 수 있다.(15. 2. 12)
- ③ 공제조합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3 조 (위 · 수탁료 등)(15. 2. 12)

- ① 공제조합은 사업조합의 위 · 수탁업무 등에 대한 위 · 수탁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회장 및 사업조합이사장에게 계약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위 · 수탁료 및 계약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위 · 수탁업무 조치 등)(06. 2. 28)

- ① 사업조합 이사장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위 · 수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제조합 위 · 수탁업무 담당자는 공제조합 지부의 위 · 수탁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위 · 수탁업무 감사)

공제조합은 사업조합의 공제조합 위 · 수탁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

- ① 공제조합에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비상임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중 이사장, 상무이사는 유급으로 하며, 그 금액은 연합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연합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이사장직을 겸직시는 무보수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선임)

- ① 공제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이사장의 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비상근 감사의 선임은 운영위원회 중에서 선임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감사의 경우에는 당해 감사가 겸임한 시 · 도사업조합 이사장의 직을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 되며 새로이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감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② 임원에게 사고가 있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며 임기 만료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당해 임원으로 하여금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9 조 (임원의 직무 및 책임)

- ① 이사장은 공제조합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매월 1회 이상 회장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업무 집행사항과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④ 임원이 법령, 공제규정 또는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책임은 총회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 20 조 (고문)

- ①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제 21 조 (총회)

- ① 총회에서는 공제조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임원 임 · 면의 동의
 3. 추가분담금 부과 및 징수
-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에 있어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③ 특정지부 소관사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회원의 의결권을 배제한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공제조합의 임원과 시 · 도 사업조합 이사장 및 회장이 위촉하는 변호사, 회계사등 외부관계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공제조합 이사장이 대행한다. (15.2.12)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공제조합의 임원 및 시 · 도 사업조합 이사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외부관계인은 2년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운영위원이 소집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사유와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06. 2. 28)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의 변경
 - 3. 공제가입금, 분담금 및 할인 · 할증 등에 관한 사항
 - 4. 공제사업의 선정 및 사업수행 방침
 - 5. 주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6. 각종 내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7. 공제조합의 사업장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8. 공제사업의 개발연구 및 평가
 - 9. 기타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⑥ 특정지부 소관사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의 의결권을 배제한다.

제 23 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 변호사, 의사, 관계, 학계, 공제조합 임직원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1. 공제금지급 기준의 설정, 변경 및 지급공제금의 심사
-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조정
- 3. 기타 공제업무에 관한 자문

제 24 조 (자문위원회 등)

- ① 회장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지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9. 1. 1)
- ② 지부 자문위원회는 시도사업조합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19. 1. 1)
- ③ 회장은 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9. 1. 1)

제 25 조 (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9. 1. 1)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 26 조 (사업년도)

공제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 27 조 (예산)

공제조합은 매사업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결산)

- ① 공제조합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제①항에 의한 감사결과를 결산을 심의하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제조합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결산을 심의하는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③항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제조합본부 및 지부사무실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한다.

제 29 조 (준비금의 적립)

- ① 공제조합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계상범위는 공제조합이 따로 정한다.

제 30 조 (자산의 조성 및 운용)

- ①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 3.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 4. 사용료 및 수수료
 - 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
 - 6. 공제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 7. 기타 수입
- ②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신탁 및 채권의 매입
 -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
 - 3. 조합원에 대한 대출
 - 4.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공제조합은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제②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조 (회계관리)

공제사업의 회계는 지부별로 운영하되 고액사고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고액사고 충당금은 전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고액사고 보상운영과 공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본부가 관장한다.

제 32 조 (결손금의 처리)(19. 11. 4)

- ① 년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1호와 2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지부별 결손금은 당해 사업년도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지부의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2.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공제분담금을 인상할 수 있다.
 - 3. 제1호의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 공제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업년도 중 지부별 결손금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 ③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손해보험회사와의 보험 가입으로 변경(이하 “이탈”이라 한다)한 때에는 이탈조합원은 제①항 제1호 및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탈 전의 공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우선 보전하여야 한다.
- ④ 적자지부의 흑자조합원이 이탈한 때에는 이탈조합원은 제①항 제1호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탈일 현재의 당해지부 총결손액에 전체계약 조합원 중 이탈조합원이 차지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하여야 한다.
- ⑤ 결손이 누적된 지부의 조합원이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공제금에 충당할 수 있다.
- ⑥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보전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이 누적 되는 지부에 대하여는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지부의 공제사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치

제 33 조 (규정의 제정)

공제조합은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 34 조 (비위사실 보고 등)

이사장은 공제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또는 부조리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